#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서명옥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845

발의연월일: 2025. 1. 24.

발 의 자:서명옥・박준태・최보윤

최은석 • 조지연 • 최수진

서천호 · 김예지 · 강선영

조정훈 • 박상웅 • 김희정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구고령화로 인해 의료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인력의 적정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정부의 공식기구 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의료계에서는 의사인력의 적정규모 추계를 함에 있어서 의료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기구를 신설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보건의료기본법」에 의사인력 추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수급추계위원회와 수급추계 업무를 지원하는 수 급추계센터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여 수급추계 논의기구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및 제21조의3 신 설 등).

#### 법률 제 호

#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분야별로"를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에 각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2(수급추계위원회) ① 제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추계위원회"라 한다)는 보건의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의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구성한다.
  -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 및 한 의사
  - 2.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호사
  - 3.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약사 및 제4조에 따른 한약사
  -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의료기사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인력
  - ② 수급추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 1.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국가 단위 수급 추계
- 2.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단위 수급 추계
- 3.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구분이 있는 직종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 이에 따른 수급 추계
- ③ 수급추계위원회는 제2항제1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지역 단위 수급추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 1. 제1항 각 호의 보건의료 직종별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 21조제3항제3호에 따른 의료인 단체, 약사회 등에서 추천하는 전 문가 중 10명
- 2.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중 3명
- 3.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동자단체, 소비자·환자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3명
- 4.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3명
- ⑤ 제4항의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직종별로 각각 위촉하되,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모든 직종별 수급추계위원 회의 위원이 되도록 위촉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1. 경제학 · 보건학 · 통계학 · 인구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 2.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한 자
- 3. 대학의 조교수,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 (7)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⑧ 수급추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급추계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및 제21조의3에 따른 수급추계센터의 장으로 한다.

제2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1조의3(수급추계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의 전문 적 추계작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기관을 의료인력수급추계센터(이하 "수급추계센터"라 한다)로 지 정·운영할 수 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2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

설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5.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정책
-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제21조의2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 보건복지부장 관은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사인력 양성규모를 결정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교육부장관은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정함에 있어 이를 존중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혂 행 개 정 **악**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제21조(위원회의 구성) ① ~ ③ (생략)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 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두고,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u>다음</u> 각 호의 검토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 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 원회 ⑤ (현행과 같음) ⑤ (생략) <신 설> 제21조의2(수급추계위원회) ① 제 21조제4항제1호에 따른 의료인 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수급 추계위원회"라 한다)는 보건의 료인력에 대해 주기적으로 중 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의 · 의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직종별로 구성한 다. 1.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

- 른 의료인 중 의사·치과의사및 한의사
- 2. 「간호법」 제4조에 따른 간 호사
- 3. 「약사법」 제2조제2호에 따 른 약사 및 제4조에 따른 한 약사
- 4.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의료기사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보건의료인력
- ② 수급추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국가단위 수급 추계
- 2. 해당 보건의료인력의 지역 단위 수급 추계
- 3.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 구분 이 있는 직종으로써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직종의 경우 이 에 따른 수급 추계
- ③ 수급추계위원회는 제2항제1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지 역 단위 수급추계, 전문과목 및 진료과목별 수급추계를 분석하 여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직종별 수급 추계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의 사람 중에서 보건복지부장 관이 임명한다.
- 1. 제1항 각 호의 보건의료 직 종별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 로서 제21조제3항제3호에 따 른 의료인 단체, 약사회 등에 서 추천하는 전문가 중 10명
- 2.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중 3명
- 3. 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단체로서 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른 노동자단체, 소비자・환 자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추 천하는 전문가 중 3명
- 4. 보건의료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중 3명
- ⑤ 제4항의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직종별로 각각 위촉하되,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위원은 모든 직종별수급추계위원회의 위원이 되도록 위촉한다.
- ⑥ 제4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u>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u> 한다.

- 1. 경제학・보건학・통계학・인

   구학 등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 2. 인력정책 또는 인력수급 추 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실적이 풍부한 자
- 3. 대학의 조교수, 연구기관의연구위원 이상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자
- ⑦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은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8 수급추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급추계위원 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 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 보건복 지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및 제 21조의3에 따른 수급추계센터 의 장으로 한다.

제21조의3(수급추계센터) ① 보건 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위원회 의 전문적 추계작업을 지원하 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의료 인력수급추계센터(이하 "수급

<신 설>

제2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제22조(위원회의 기능)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4. (생 략) <신 설> 5. (생략) <신 설>

<u>추계센터"라</u> 한다)로 지정·운 영할 수 있다.

-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공공기관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급추계 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 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1. ~ 4. (현행과 같음)
- 5. 의료인력 수급에 관한 정책
- <u>6</u>. (현행 제5호와 같음)
- ② 위원회가 제1항제5호의 사 항을 심의할 때에는 제21조의2 에 따른 수급추계위원회의 심 의・의결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